

16. 기 타 :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

제8조 【입소정원 및 모집방법】

1. 입소정원은 허가기관의 정원으로 정한다.(개정)
2.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제9조 【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】

1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2. 계약기간(개정)

-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(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).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
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
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
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>

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(30일 기준).

※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당해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
구 분		금액(원/%)	내 역
장기요양급여	공단지원금	총액의80% (주간보호 85%)	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뺀 100%중 80% (주간보호 85%) 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.
	본인부담	총액의20% (주간보호 15%)	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. 경감대상자는 12%, 8% (주간보호: 9%, 6%) 경감될 수 있음
비급여항목	식사재료비 (간식 포함)	사업계획서 참조 (사업내용에 상세기록)	-요양시설: 자체급식. 1일 3식 + 1 간식 -주간보호: 위탁급식업체, 1일 1식 1회 간식
	이. 미용 서비스	월/1회	수급자가 외부 이미용 서비스를 원할 경우 수급자가 부담함(시설내 자원봉사 이.미용 서비스는 무료적용함)

⑦ 입소서류: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주민등록등본(어르신 성함으로),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 성함으로),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 유무 확인), 신분증

제10조 【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】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입소자)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·의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2. 입소자의 의무

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
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
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
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3. 입소자의 권리

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
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
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
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4. 보호자의 의무

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5. 보호자의 권리

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제11조 【퇴소 및 계약의 해지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3.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

4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5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
6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7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.

8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제12조 【임종 및 장례절차, 유류금품 처리】

1.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후송조치

①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.

②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·직원이 임종을 모실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③ 입소자가 부득이하게 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, 보호자 결정에 따라 원가정이나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 준 후 시신 인도를 한다